

인권정보자료실
NSL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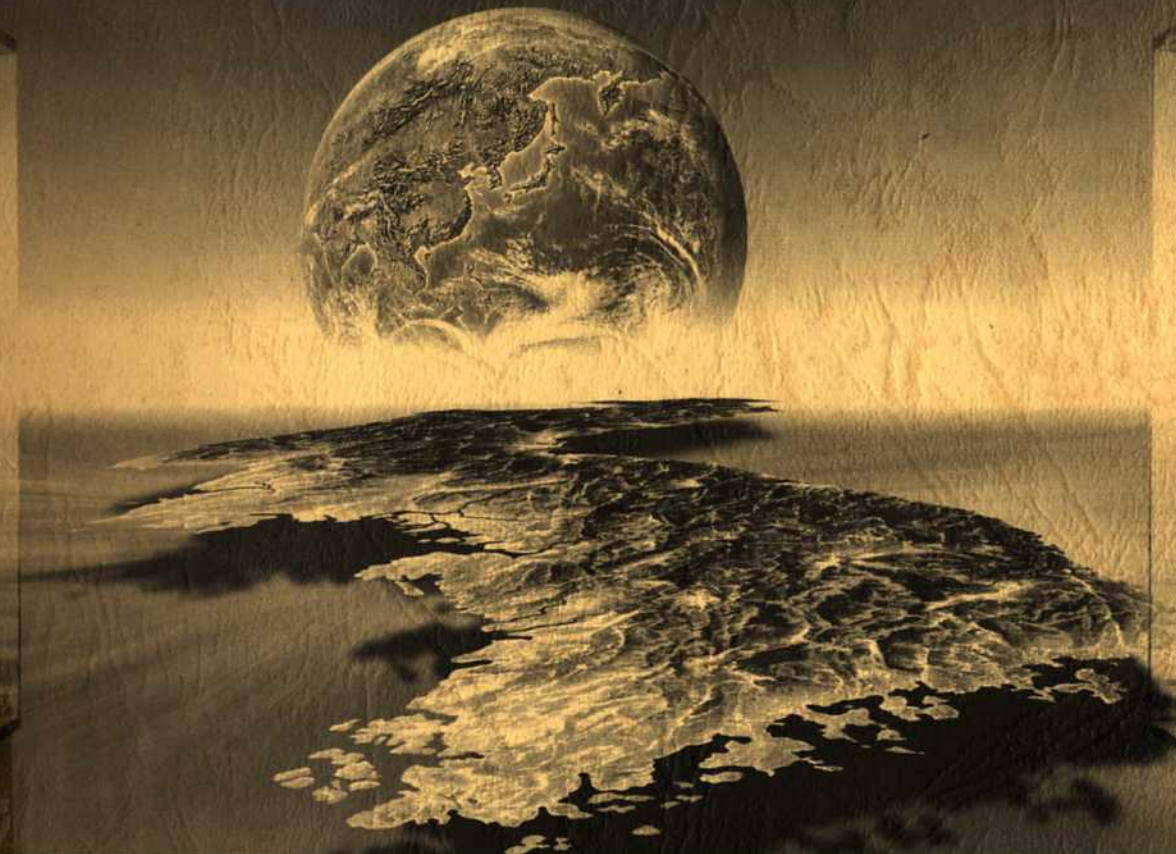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은 없다

국회의원 임종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8호
Tel. 788-2021/784-1734 Fax. 788-3718
e-mail. js@jsstory.net

www.jsstory.net

인권정보자료실
NSL1.97



2004 정기국회 | 정책자료집 IV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종석

국가보안법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원칙과 전략
국가보안법 폐지 분석과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경과와 참고자료

2004년 10월 12일

“국가보안법은 없다” 자료집을 발간하며 ----- 1

1. 원칙과 전략

1)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이유 ----- 2
2) 본질이 변하지 않는 대체입법론은 변형된 국가보안법 존치론일 뿐이다 ----- 8
3) 국가보안법 폐지 전략 프로세스 ----- 11

2. 분석과 주장

1) 국가보안법 더 이상 존재가치 없다 (중앙일보 기고문, '04.5.13) ----- 12
2) 국가보안법은 굴절된 현대사가 낳은 돌연변이법 (국민일보 기고문, '04.8.17) ----- 14
3) 박근혜 대표의 표변, 나라위한 결단 아니다. (대변인 논평, '04.9.9) ----- 16
4) 국가보안법 폐지 배경과 논거 분석 (열린우리당 국보법폐지 간담회 발제문, '04.7.21) --17

3. 경과와 참고자료

1)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 활동 경과 ----- 23
2)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통계와 사례 ----- 25
3)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28
4) 국가보안법 원문 ----- 33

[자료집을 발간하며]

국가보안법은 없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없었다.

이 땅에는 56년 동안 오직 국가보안이라는 허울을 쓴 정권유지법, 인권탄압법, 민족분열법이 있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했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에 행동과 신체에 채찍질을 가했다. 국가는 억압을 멈추지 않았고 국민은 굴종을 끝없이 강요받았다. 그러나 갈라진 나라는 합쳐져야 하고 빼앗긴 인권은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폐지되어야 한다.

17대 국회의 몫이다. 그 어느 때보다 통일개혁세력, 민주인권세력이 주도권을 확보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이 2004년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메야겠다.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석

1. 원칙과 전략

1)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이유

- 국회의원 임종석 (2004. 8. 4)

■ 냉전과 분단의 시계는 멈추었다.

2004년 현재 한반도의 냉전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전과 분단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존재했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음을 본다.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이며 왜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194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로 그 해 그 순간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비극적 씨앗을 뿌리며 전 세계의 보편적 발전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국가보안법은 19세기의 발상으로 20세기를 호령했던 역사의 사생아이자 법의 존재의미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입법사의 돌연변이이다. 또한 그 스스로 ‘악법도 법’임을 증명하는 비극적 사례이기도 하다.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법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저서에서 “법의 목표는 평화이며, 평화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는 구절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격을 지키는 것이자 사회정의를 위한 것임을 밝힌바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할 근거와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금과옥조가 아닐 수 없다.

■ 국가보안법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요인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데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체계 및 그 통제를 규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법 질서는 헌법에

그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헌법이 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가치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유독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법률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헌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선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범죄와 형벌을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로 한국의 법을 전락시켰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으로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철칙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문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백지형법’ 식의 요건을 두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델홈스는 “법이 보장해야 할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말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법에 의해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요건과 제약의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밝힌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 체제상으로는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상위에 군림하면서,

- ▶ 인감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 ▶ 고문금지, 목비권보장, 형사피고인의 권리보장 등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 ▶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허가, 검열의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 ▶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등을 철저히 유린하여 왔고 어떠한 자유도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초헌법적 존재로 반세기를 버텼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중요한 논거는 동법이 폐지되어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진정으로 위협성 있는 국가안

보 침해사범은 충분히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가입, 예비, 음모 조항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예비, 음모, 제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중복
- ▶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은 형법의 각조에 의해 대체가능
- ▶ 국가보안법 제5조의 자진지원, 금품수수 조항은 형법의 공범규정으로 처벌가능
- ▶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은 형법 제 92조 외환죄, 제98조의 간첩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 ▶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과 제9조의 편의제공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범유형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만 형법에 의해 처벌하면 되고
- ▶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는 단순 불고지범을 처벌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며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 등과의 관계에서 상충적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의 수립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른바 '통치행위론'으로 용인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문제를 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2조는 명백히 북한당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을 그대로 둔 채 반국가단체와 교류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거의 모든 법조문에서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왕래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 탈출과
- ▶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교역 조항과 제19조 반입반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조항 및 제9조 편의제공과
- ▶ 남북교류협력법 17조 이하 협력사업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및 제8조의 회합통신 조항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런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내지 29조 등에서 남북왕래, 교류 등의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전 승인 없는 남북간의 접촉행위가 단순한 질서범(행정범)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이미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한시법이자 군사정권에 강화되고 악용되어온 정권 유지법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11) → 국가보안법으로 명칭변경을 거쳐 제정(1948.12.1) 되었으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승계한 죽고 죽이는 극단적 좌우대립 시기의 산물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1961년 제정된 반공법과 합쳐져 전두환 군사정권(1980년)에 의해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즉, 이승만 정권 시대의 무자비한 좌익사냥의 도구(제정 국가보안법)와 박정희 군사쿠데타 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인 반공법이 전두환 학살정권에 의해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통합된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냉전, 독재와 인권탄압의 역사와 완전하게 한 몸이었다.

■ 국가보안법은 적용과정과 방식이 불법성과 야만성으로 가득한 반민주악법의 상징이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첫 단계인 연행에서부터 재판이 확정된 후 복역과정의 전향압력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데 있다. 범죄의 진압을 위한 공권력 행사가 마찬가지로 '범죄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공권력 행사는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기소가 없으며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었다.

불법연행, 장기구금, 행방불명, 밀실수사와 고문, 조작, 감시와 감금, 차별과 소외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단어들은 국가보안법이 역사와 국민에게 상처로 남겨준 슬픈 기억들이다.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통일은 공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 국가보안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데타 권력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에 흡수된 반공법 역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임의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두 기관은 명백히 국회가 아닌 불법적 군사쿠데타 세력의 무단통치 기구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제정의 역사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법률의 규범력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곡된 과거사 청산의 중핵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핵심과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가 잃을 건 냉전과 분단, 반인권과 비민주의 어둠이요, 얻을 건 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빛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가치 있고 존재해야 할 것을 먹어치우고 모든 무가치하고 사라져야 할 것을 토해내는 反역사의 상징이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왜곡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비단 그 사실을 규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역사 왜곡을 낳았던 조건과 환경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실체를 혁파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거사 청산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본질적 이유다.

17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시금석이다.

■ 국가보안법은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고비용 악법으로서 〈남북화해협력시대〉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더구나 반공과 반북이 언제까지 헌법을 능가하는 국민적 가치일 수는 없다. 이제는 굵은 것을 펴고 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반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며,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2) 본질이 변하지 않는 대체입법론은 변형된 국가보안법 존치론일 뿐이다.

- 오마이뉴스 기고문 (2004.9.21)

■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법영역에서의 햇볕정책!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었다. 분단과 냉전의 비극을 씻어내는 왕래와 상봉이 줄을 이었고 연이은 당국자 회담과 교역의 획기적 증가는 민족공동체요 통일의 동반자로서 남과 북을 재 정의하고 있다. 햇볕정책이 민족의 미래를 여는 평화와 통일의 전령이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법영역에서의 햇볕정책이자 시대적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확립할 때!

국가보안법은 냉전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사냥했으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억압했다. 국가보안법은 불법연행, 밀실수사, 고문조작, 감시와 구금 등 섬뜩한 기억과 고통스런 상처 그 자체였다. 이제 허구와 불의,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것인가?

■ 열린우리당이 결단과 책임의 자세로 개혁 주도력 회복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형법에 의해 국가안보와 민주질서 수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보완입법을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그리고 한달이 가까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역사적 당위와 실질적 다수당론이 명백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야당의 눈치를 살피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스스로 개혁 주도력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여당의 방향 없는 표류를 보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란 평가해주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선택과 집중, 결단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도부의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 21세기의 인권과 평화는 국가보안법과 공존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파괴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끊임없이 불신하고 증오하며, 파괴하고 부정하는 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가의 품질과 가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식민지에서 해방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분단에서 통일로, 역경과 고난을 뚫고 전진하고 있는 한민족, 한국인이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인권이고 평화 아닌가? 식민지에서 독재에서 분단에서 가장 신음하고 절규했던 것은 국민들의 인권이었고, 해방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곳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닌가? 그런 피땀의 결실인 21세기의 인권과 평화가 어찌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과 공존하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어제와 오늘이 만나 내일이 된다.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자.

■ 냉전의 산물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지는게 순리!

지난 9월 19일 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등 가장 권위 있는 형사법 전공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선에 권위있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전에서의 무장해제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는 것이 요지다.

이 주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소수 좌파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합리적 중도개혁의 아젠다이자 시대적 대세임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냉전과 분단의 시계는 멈추었다. 멈춘 시계로 역사의 전진을 측정할 수는 없다. 냉전의 산물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지는 게 순리다.

■ 박대표의 정부참칭 삭제가능 주장은 국보법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악법임을 실토하는 것!

박근혜대표가 돌연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을 삭제할 수도 있고 국가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형법보완과 보완입법을 놓고 표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표의 오락가락행보에 휘둘리지 말자. 박근혜대표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개정론이나 대체입법론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박근혜대표가 없앨 수 있다고 말한 2조 정부참칭은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 조항에 의해 북한은 지금까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왔다.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하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로 박대표는 지난 4월 21일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 삭제를 포함한 전면개정을 주장했다가 9월 9일에는 입장을 바꿔 국가보안법 사수를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므로 특별할 건 없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 박근혜대표도 국가보안법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시대착오적 악법임을 실토했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사와 미래에 대해 확고히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 대체입법은 변형된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불과!

대체입법은 변형된 국가보안법에 불과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참뜻이 사라지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2조 정부참칭 조항이 사라지면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에 의해 규율되기 힘든 유일한 조항은 7조 찬양고무와 10조 불고지죄뿐이다. 대체입법 주장은 실제로 7조와 10조를 가지고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7조와 10조는 국가보안법 개정론자들조차도 없어야 할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대체입법은 입법의 당위와 근거가 없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형법보완의 경우도 형법 99조 일반이적 조항 등 최소한의 보완을 통해 확대 해석이나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해야함은 물론이다.

독소조항이 온존되고 허울만 바뀌는 대체입법은 우리를 또 한번 절망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체계의 누더기일 뿐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가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

국가안위와 민주질서는 악법의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의 성숙한 국민의식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음을 각인하자. 한나라당의 존재이유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라면,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하는 중단 없는 개혁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 전략 프로세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 -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04. 7. 21, 주최: 임종석 의원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의원모임 구성
(2004. 8. 4, 공동간사: 임종석, 우원식, 이상민, 이은영)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안 서명
(2004. 8. 9 ~ 8. 31 우리당 의원 87명 공동발의)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2004.9.5)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및 보완입법" 1차 당론 확정
(2004. 9. 9. 우리당 의원총회)

최종입법방향 연구

공청회 개최

열린우리당 당론 확정 및 법안 제출
(2004. 10월 중순)

대국민 홍보

대야실득, 공조추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전원위원회
(법사위 처리 불가능할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의결, 형법 개정
(2004년 11월)

2. 분석과 주장

1) 국가보안법, 더 이상 존재가치 없다

- 중앙일보 기고문 (2004.5.13)

법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유지수단이자 사회정의의 완성이다. 또한 법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국가보안법의 핵심규정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중법적용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장 절실한 논거는 반헌법적 성격과 역기능에서 나온다. 제정 후 56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 고착의 명에였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광폭한 무기였으며,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 인권을 말살한 탄압의 칼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사냥했으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억압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져야 할 운명을 타고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 전인 1948년 남과 북이 사활을 놓고 싸우던 시기에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을 흡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해석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1990년 국가보안법을 두고 “그 용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헌법 19조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법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찬양고무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와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 제19조의 “인간은 누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선언에도 위반된다.

한반도 냉전체제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남북교류 협력으로 2003년 한해 교역액은 7억 달러를 넘어섰고,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1만5천

명에 이른다. 지난 달 발생한 룡천역 폭발사고 직후 정부와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화해협력과 동포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태어났던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실례로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인데, 이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중 92.6%인 38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한총련이라는 대학생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다. 국가보안법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입법사와 반세기에 걸친 개폐논쟁 그리고 UN국제인권규약과 냉전이 무너진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낡은 이념논쟁이 재연되고 남북화해협력에 장애가 되는 남남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론분열이 아닌 국론통합의 성격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프로세스가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정치개혁과 남북화해협력,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은 정치개혁과 남북화해협력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냉전과 분단, 반인권, 반자유가 전부이다. 시대착오적인 법률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할 때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굴절된 현대사가 낳은 돌연변이 법!

- 국민일보 기고문 (2004.8.17)

1948년 12월 UN 총회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를 거스르는 불행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국가보안법이 국민에게 준 것이라곤 불법연행, 장기구금, 행방불명, 밀실수사와 고문, 조작, 감시와 감금, 차별과 소외 등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상처와 고통스런 기억들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서 고통스러운 수난의 한국 현대사를 만들어왔다. 그렇게 56년이 지나갔다. 시대는 바뀌었고 상황은 달라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마침내 냉전과 분단의 시계추는 멈추었다. 그렇지만 이미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낡고 녹슨 칼을 놓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실로 법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굴절된 현대사가 낳은 돌연변이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법이고 분단과 냉전을 재생산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요 논거를 다시 한 번 요약해보자.

첫째는 위헌성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를 파괴했고, 신체의 자유(제12조)를 부정했으며,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송두리째 박탈하였다.

둘째는 중복성이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의 중복규정으로 폐지되어도 국가안보와 민주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가입, 예비, 음모 조항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과 중복되며, 제6조 잠입, 탈출은 형법 제 92조 외환죄, 제98조의 간첩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셋째는 상충성이다. 국가보안법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고 또한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 기본법과 공존할 수 없는 반통일 악법이다. 두

법은 그 출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은 각각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와 충돌한다.

넷째는 정통성의 결여다. 국가보안법은 '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고 탄생한 불법적 국민통제수단일 뿐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데타 권력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합, 제정되었고, 이에 흡수된 반공법 역시 1960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임의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 두 기관은 국회가 아니라 군사쿠데타 세력의 무단 통치 기구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라는 점이다.

냉전과 독재의 시대가 가고 통일과 민주주의의 시대가 밝은지 이미 오래다.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3) 박근혜 대표의 표변(豹變), 나라위한 결단 아니다.

- 대변인 논평 (2004.9.9)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출발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後 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제 정국은 칼끝 같이 위태로운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안타깝고 또 한편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이전의 한나라당 대표들과는 달리 남북문제에 대해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철학을 가지고 전향적 태도를 표하고자 했던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논란이 뜨거운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 문제를 포함한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역시 4월 29일 의원연찬회에서 “정부참칭 조항도 실효를 잃은 조항”이라며 보안법 개정 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박근혜 대표는 당내 수구 세력에 포위되고 사회기득권 집단에 굴복하여 소모적 정쟁과 이념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화해협력의 미소에서 수구냉전의 냉혈한으로 돌변한 박근혜 대표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치인에게는 “말의 신뢰성”이 생명이지만 박근혜 대표의 표변(豹變)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의 대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국가보안법의 철갑옷을 입고 어찌 평화의 바다를 헤엄치려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보완으로 우리가 잃을 것은 반인권, 반민주 악법의 오명이고, 얻을 것은 민주인권국가로서의 품위다. 향후 열린우리당은 9월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함은 물론 즉각적인 대야협약에 착수할 것이다.

4) 국가보안법 폐지 배경과 논거 분석

-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발제문(2004.7.21)

(1) 국가보안법 제정의 연혁과 적용을 통해 본 문제점

①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시대적 배경

- 1948년 12월 1일 제정
- 여순사건 직후 극단적인 좌우익간 갈등 구조 속에 탄생
- 탄생 당시에도 정치적 악용가능성, 반민주악법이란 논란이 있었음
- 한시법적,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탄생

② 제정형법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만든 법

-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
- 제정형법 담당했던 형법기초위원회 방침 “단행법으로 규정된 형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형법에 통괄”. 따라서 형법입안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
- 법사위원장 윤길중 의원이 제안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표결. 하지만 1953년 6.25 전쟁 중이라는 심리적·환경적 사정으로 폐지안은 부결.
- 1953년 김형로 대법원장 “형법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두에 두어 두고 만들었다”

③ 1980년 전면개정 당시 국가보안법 개악

- 5.16 쿠데타 직후 1961년 제정되었던 반공법을 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하면서 대표적인 악법조항인 7조 찬양고무죄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편입

④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로 악용

-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용으로 오남용 되어왔고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음.
- 대표적 사례 내란정권에 반대한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 오히려 반국가단체 구성 죄를 씌워 사형 선고.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① 反 기본권적, 反 민주주의적 특성

-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억압해왔음.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이를 침해할 때는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본질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지만 (37조 2항) 국가보안법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

② 평화통일 추구조항에 배치

- 헌법 4조, 66조는 "평화통일 추구"를 선언하고 있음.
-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북한은 "주권국가" 적어도 "사실상의 국가" 라는 것이 현실.
- 하지만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 추구해야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됨.

③ 평등권 위반

-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하지만 일부 대북정책 추진자나 친정부적 인사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대북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일부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의해 처벌여부가 가려짐으로써 평등권 위반.

④ 죄형법정주의 위배 및 反 법치주의

- 헌법 제 12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정성, 명확성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또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를 천명하고 있음.
-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불확정개념 (이적단체, 고무찬양 등의 용어) 을 사용하고 있어 유추해석이 불가피함.
-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 ('---할 목적으로' 등의 조문) 에 의하여 범죄성립이 좌우되어 행위형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심정형법, 사상통제형법이 되어 왔음.

(3)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와의 비교법적 고찰

① 국제규범에 비춰 본 국가보안법

- 1990년 세계인권 규약에 가입.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음.
-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성격에 대해 지적하고 폐지 권고. 1995년 11월 재차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998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걸쳐 국가보안법이 인권규약 위배한 것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구제조치 취하라고 요구.

② 선진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

- ▶ 공산주의 규제법, 메케런법 : 체제수호를 위한 법. 공산주의단체의 활동을 통제·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 ▶ 1950년 매카시즘 당시 제정된 이러한 반공법에 대해 1957년, 1967년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문화되거나 위헌선언이 내려짐.

○ 독일

- ▶ 형법 제 3절 84조부터 86조까지 : 국가의 안전보장 내지 헌법수호를 위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 ▶ 결사법 : 1964년 제정. 엄격한 요건 아래서 결사조직 금지
- ▶ 위와 같은 독일의 규정들은 나치 체제 경험한 독일적 상황에서 새로운 독재체제의 출현에 대한 방어 장치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제정.
- ▶ 이러한 법률조치 1950, 60년대 제정되었고 이미 1968년부터는 독일공산당의 대체조직이 수많은 정치에 참여해왔음.

또한 현재 독일 야당인 민주사회당은 동독 집권당의 후신일 정도로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음.

○ 일본

- ▶ 파괴활동방지법 : 1952년 7월 21일 제정. 미군정 종료 후 치안기구 약체 현상 우려에 대비하여 반체제적 단체의 불법적인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제정.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시위·행진·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
- ▶ 정치범죄의 규제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고작 8건이 기소될 정도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고, 법원이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걸어와 사실상 사문화 됨.

[참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자 주장 및 반론

- ①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는 주장에 대해
- ➔ 사회의 다원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제 사회에서 남북대치상황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적극 주장할 수 없다.
 - ➔ 유엔인권위 권고문 중 “한국의 특수상황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 ②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변화 없이 우리만 변화하면 안보가 악화된다.” 는 주장에 대해
- ➔ 안보의식은 대북 적개심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우울감과 국방정책의 주도면밀함에서 오는 것.
 - ➔ 체제가 다른 북한과 모든 면에서 동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내부통제제도 있다고 해서 남한 사회에도 통제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다.
- ③ “국가보안법은 대북정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남북관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 ➔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 법률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여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 존치시킨 후 점차 개선해야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치적·군사적 위협에 대처 장치 필요하다.” 는 주장에 대해
- ➔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조항으로 처벌 가능하다.
 - ➔ 공산당이 활약할 것이라는 우려는 헌법(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경우 해산하도록 규정)과 정당법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 ➔ 형법은 최후수단성과 책임비례성의 원칙 하에 개입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범의 절도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손을 절단하는 것이겠지만 형법은 그런 수단을 쓰지 않는다.

⑤ “국가보안법의 악용은 잘못된 절차 탓이지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일부 독소조항 개정만으로 충분하다.” 는 주장에 대해

- ➔ 국가보안법 자체가 악용을 피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이나 실정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 공안기관은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국가보안법 7조의 경우, 1990년 한정합헌 판결 이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이 역시 추상적인 문구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다는 점은 다름이 없었다.
- ➔ 실제 개정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그 전과 후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⑥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 필요하다.” 는 주장에 대해

- ➔ 1989년 13대 국회, 1993년 14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으로 <민주질서보호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 ➔ 그러나 동법률안 5, 6, 7조에서 국가보안법상의 7조, 4조, 5조 등의 내용을 죄형법정주의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담고 있다.
- ➔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형된 존속을 의미하므로 옳지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로드맵

1. 방향과 접근

법이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충실히 반영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함.

다만 2조, 7조, 10조, 18조, 19조를 포함하는 전면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 나감으로써 국가보안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승화.

2. 주체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입법연대>를 구축.

3. 관련성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개혁입법과제인 남북교류협력법 전면개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시병행의 원칙하에 추진.

4. 일정 및 프로세스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7/21)
- ▶ 국보법 폐지 관련 당내 의견 종합·조정 (7/31까지)
- ▶ 국보법 폐지 T/F 구성 (8/3 1차 회의)
(가칭)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
- ▶ 공론 형성 및 입법 조사 (8/3~8/20)
- ▶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제출 및 당정협의(법무부, 통일부, 국정원) 착수 (8/25)
- ▶ 열린우리당 당론 추진 및 야당과의 협력, 연대 (8/20~30)
- ▶ 정기국회 - 국보법 폐지 입법 추진 (9월~12월)

2004. 7. 21

「(가칭)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의원모임」 준비모임

3. 경과와 참고자료

1)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입법추진의원모임 활동 경과

○ 7/2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 참석의원 : 신기남, 임채정, 한명숙, 김영주, 이상호, 강기정, 이은영, 정성호, 노영민, 이영호, 임종석, 최재성, 김형주, 복기왕, 정청래, 오제세 (이상 16명)
- ◆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및 폐지 이후 처벌공백 검토 논의
- ◆ 참여단체 : 민가협,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변 (김승교 변호사 발제) 등

○ 7/26 (가칭)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 준비모임

- ◆ 참석의원 : 한명숙, 이은영, 이상민, 우원식, 임종석, 김영주, 복기왕, 이영호, 노영민 (이상 10명)
- ◆ 입법추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8/4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 구성 및 1차 모임

- ◆ 참석의원 : 강혜숙, 김영주, 김재윤, 우원식, 유기홍, 이경숙, 이광철, 이상민, 임종석, 장영달, 전병헌, 최재성, 홍미영 (이상 13명)
- ◆ 총 61명 동참. 국가보안법 폐지 초안 검토 및 향후 추진 일정 논의

○ 8/9~8/31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진행

- ◆ 우리당 의원 87명 공동발의 동참

○ 8/25 입법추진의원모임 내부 세미나

- ◆ 참석의원 : 강기정, 강혜숙, 김태년, 김재윤, 노영민, 복기왕, 선병렬, 이상호, 우원식, 유기홍,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상락, 이상민, 이은영, 임종석, 임종인, 한병도 (이상 19명)
- ◆ 폐지 후 형법 보완으로 의견 수렴

○ 9/5 대통령 MBC 시사매거진2580 출연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 의견 피력

○ 9/9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당론 결정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의원모임 명단 (61명)]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홍, 김영주, 김원용, 김재윤,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학진, 민병두,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송영길, 안민석, 염동연, 오영식,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상락, 이상민, 이석현,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청래, 조정식, 최규성, 최규식, 최재성,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87명)]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홍, 김기석, 김선미, 김영주, 김원용,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학진, 민병두, 박명광, 박찬석, 박홍수,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안민석, 염동연, 오영식,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락, 이상민,
 이석현,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정식,
 지병문, 최 성, 최규성, 최규식,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2)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 통계와 사례

① 1948.12.1~1960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추계

※ 1948.12.1 제정 이후 1960년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료를 취합하여 추계.

- 제정 후 1년 전후 수만명 처벌
 - 1949년 한 해 동안 118,621명 검거 (당시 국제연합 조선위원단 보고)
 - '49.1~9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건수 25,863건 (당시 법무부 사법행정처 자료)

-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
 - 한국 전쟁 기간 중 위 긴급명령에 의해 부역자로 처리된 자 550,915 명

-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 4·19 이전까지
 - 대표적 사례 :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사형집행 ('58.1 국보법 위반 구속 → 1심 징역 5년 → '59.7.31 사형)
 - "막걸리 보안법" 별칭 탄생 : '60.3.31 술 마시고 대통령 욕설하던 선우만혁氏 징역 3년

② 1961~1980년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인원

	국가 보안법	반공법	정치활동 정화법	사회 안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비상사태 하의범죄 처벌에관 한특별조 치법	국가보위 에관한특 별조치법	긴급조치 제9호	계
1961	296					1			297
1962			3,038						3,038
1963	102	86			239				427
1964	29	79			18				126
1965	37	84			98	3			222
1966	44	104			7	2			157
1967	44	110			4	6			164
1968	83	168			37	1			289
1969	81	323			27	1			432
1970	204	368			25				597

1971	217	276			49				543
1972	175	507			24	1			706
1973	164	260			37				461
1974	152	228			7				387
1975	74	328		5	13				420
1976	121	386		9	29			198	738
1977	35	322		1				157	515
1978	30	208		3	6		11	215	473
1979	57	199		1	2			160	414
1980	23	136	811		3		4	1	978
	1,968	4,167	3,849	19	625	15	15	726	11,384

③ 1961~1979년(박정희 정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기소 인원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계
국가보안법	156	15	9	100	86	69	131	270	254	204	217	175	164	152	74	121	35	30	57	2,319
반공법	26	23	48	112	124	-	207	381	627	368	276	507	260	228	328	386	322	208	194	4,625
계	182	38	57	212	210	69	338	651	881	572	493	682	424	380	402	507	357	238	251	6,944

④ 1980~1987년(전두환 정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기소 인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국가보안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535
반공법	136	65	13	-	3	2	5	-	224
계	159	234	184	153	96	178	323	432	1,759
입건자수	167	270	234	121	106	127	527	489	2,041
구속자수	116	116	166	108	94	101	365	302	1,368

⑤ 1988~1992년(노태우 정권)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 인원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국가보안법	104	312	414	357	342	1,529

⑥ 1993~1997년(김영삼 정권)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기소인원	136	403	226	413	633	1,811
구속자수	112	393	285	499	677	1,966

⑦ 1998~2002년(김대중 정권)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입건자수	785	506	286	247	231	2,055
구속자수	465	312	130	126	131	1,164

⑧ 2003~2004년 7월말 (노무현 정권)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

	2003	2004.7	계
입건자수	165	75	240
구속자수	84	28	112

※ 통계추산이 가능한 1961년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 13,083 명 이상으로 추정됨.

자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3)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원문

-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 案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04. .

발 의 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함.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여왔음.

둘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임.

셋째, 국가보안법은 현대문명사회에서 야만적인 사법살인이라고 비난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사범보다 20일이나 더 긴 5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률임.

넷째, 국가보안법은 형법, 남북교류협력법, 출입국관리법, 정당법, 여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므로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과거 50년 동안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인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음.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의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하여도 형법, 정당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대체 규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보장에 전혀 위해를 초래하지 않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은 2000년대 이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법률임. 또한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근본적으로 충돌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류협력의 주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고비용 악법임.

일곱째,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1992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권고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반인권적 악법임.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법률 제 호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및 特定犯罪에대한公訴權制限에關한法律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家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로 한다.

②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을 “第2章(利敵의 罪)”으로 한다.

③獨立有功者禮遇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軍刑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⑥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를 “軍刑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⑦國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⑧選舉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强盜 및 國家保安法 違反의 犯罪”를 “强盜”로 한다

⑨軍人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를 “第2章(利敵의 罪)”로 한다.

⑩戒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⑪軍事法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중 “軍刑法 第80條 및 第81條의 罪와 國家保安法,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集會및示威에 관한法律(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를 “軍刑法 제 80조 및 제81조의 죄,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로 한다.

⑫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⑬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⑭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⑮1959年12月31日以前에退職한軍人의退職給與金支給에 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⑯뉴스通信振興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를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 2항·제11조 내지 제16조의 죄를 범하여”로 한다.

⑰測量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로 한다.

⑱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⑲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6호 중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로 한다.

제71조제2호중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軍刑法중 利敵의 罪”로 한다.

㉔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㉕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중 “國家保安法, 刑法 第2編第1章·第2章”을 “刑法 第2編第1章·第2章”으로 한다.

㉖特殊任務修行者支援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㉗參戰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㉘5·18民主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이외의 다른 법령에 서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국가보안법 원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1·5·31>

제2조 (정의<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항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

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④삭제 <19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90 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